

서울북부지방법원 2019. 1. 11 선고 2017가단1107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만석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정은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용훈

변론 종결 2018. 12. 7

판결 선고 2019. 1. 11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/2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6. 11. 9. 접수 제1052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등기'라 한다)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전제사실

가. 원고와 C는 2007. 2. 26. D 소유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1/2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원고는 2016. 11. 9. 피고에게 위 원고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50,000,000, 채무자 원고,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해 주었다.

다. 원고는 2017. 4. 24. C에게 위 원고 지분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, 별지 기재 부동산이 임의경매되어 2018. 6. 8. 위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었

다.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호증, 을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원고는, 원고가 채권자들의 경매신청으로 힘들어하자 피고가 허위의 채무를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자고 제안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해 준 것이므로: 존재하지 않는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제하고 원인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러나 을 3~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·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경과로 위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경매방해죄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5916호로 기소되었다가 '실제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'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, · 원고가 2016. 11.경 피고에게 '50,000,000(₩)를 차용하였고 2017. 1. 20.까지 변제하겠다'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, · 2017. 3. 21.과 2017. 4. 10. 두 차례에 걸친 원·피고 사이의 통화 내용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50,000,000(₩)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채무변제 방안을 서로 논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,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,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채무부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박재경

별지